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March 2015 vol.120

## 이달의 이슈

세계 주요 도시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효과, 전망

황선자

서울형 생활임금제 실행과 과제

최 봉

## 생생리포트

한국의 생활임금 - 현장의 목소리

정의영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시민경제연구실

##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통통

FOCUS/ZOOM IN

HOT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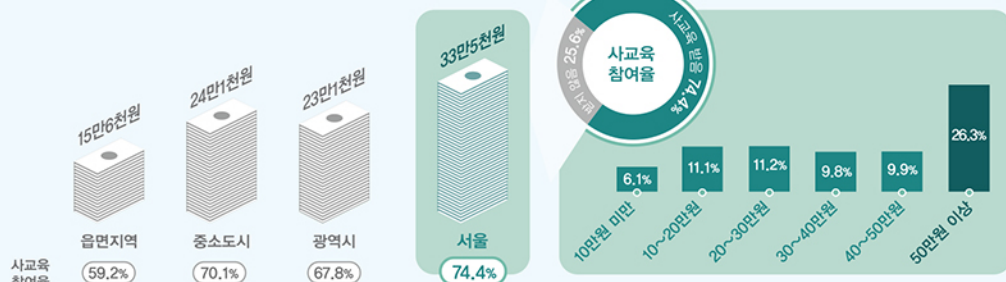
김가영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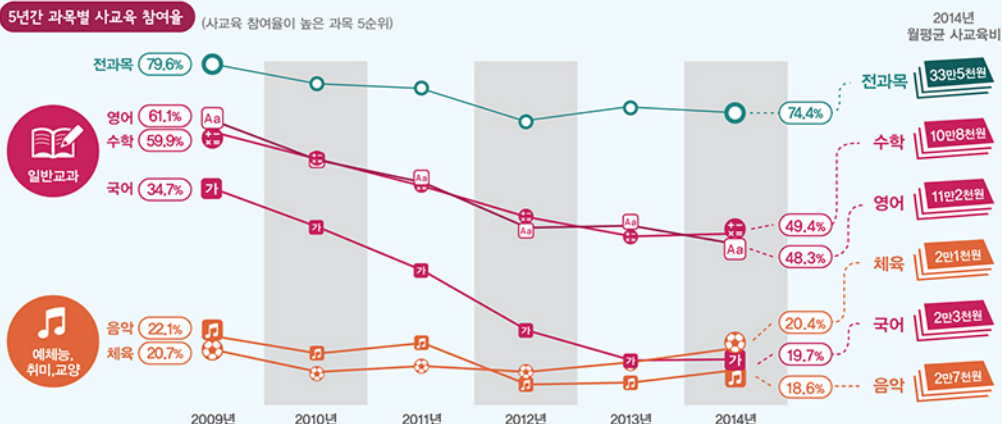
##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서울의 학생 중 74.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천원  
국·영·수 등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하락 추세에 완연하나, 예체능은 참여율 하락이 소폭에 그침

서울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년간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과목 5순위)



**이달의 이슈** 3 세계 주요 도시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효과, 전망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 서울형 생활임금제 실행과 과제  
최봉(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실장)

**생생리포트** 19 한국의 생활임금 - 현장의 목소리  
정의영(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인포그래픽스** 39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동향** 45 요 약  
47 생 산  
49 소 비  
50 고 용  
53 물 가  
54 부동산  
56 금 융  
64 수출입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정의영(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통통** 71 FOCUS/ZOOM IN/HOT ISSUE/PHOTO@NEWS  
김가영(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 세계 주요 도시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효과, 전망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jhoang@empas.com](mailto:sjhoang@empas.com)



### 1. 들어가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 차원 공공정책의 하나로 20여 년 전인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시행된 생활임금제가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도입된 생활임금제를, 광역자치체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서울시 생활임금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존재하므로, 외국의 사례로부터 이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생활임금제가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국,

---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숭실대 경제학 박사
- 고령화시대의 고용정책: 중·고령자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2014), 노동조합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연구(2014), 임금체계의 실태와 정책과제(2013),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2013),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보급방안(2013) 등

영국, 일본의 생활임금 도입 현황을 검토하며, 생활임금의 의의와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제의 향후 전망과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과제를 제시한다.

## 2. 경기회복과 생활임금 도입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5일 내수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상당 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13일에는 재계에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소득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임금인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임금을 높여야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을 통해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15년까지 10.10달러(약 1만 원)로 높이는 인상안을 내놓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에 고용된 계약 노동자들에게는 즉각 시행하게 하였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근로 빈곤층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고용 회복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과 ‘나쁜 일자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소비 회복과 경제 선순환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하였고, 사용자 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는 회원사들에게 임금인상을 권고하였다. 독일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3년 서울 노원구성북구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부천시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조례 또는 행정명령(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높은 생활임금(시급 6,687원)을 받게 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107원(19.8%)이 많은 금액이고,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범위가 기본급·교통비·식대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한 달 임금총액은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생활임금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 정책은 중앙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및 내수 진작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세계 주요 도시 생활임금 도입 현황

생활임금제는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선구적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된 이래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1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험은 세계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법정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생활임금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생활임금 캠페인은 미국의 경제정책 및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빈곤증가를 공공정책을 이용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빈부 격차의 증가, 임시직의 증가, 대규모 일시 해고의 발생, 실질 임금의 하락, 노조 조직률의 하락,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방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질 최저임금의 하락, 근로 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보조의 감소 등으로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0~1970년대 전일제 노동자의 연 최저임금 수준은 3인 가족의 빈곤선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 최저임금 수준이 3인 가족 빈곤선의 2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정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대표적 사례가 공공조달계약과 생활임금 보장을

연계시킨 생활임금 캠페인이었다.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와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근로 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계층의 임금 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제도로 생활임금 운동이 사용되었다.

1994년 12월 볼티모어시에서 최초의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는 주, 시, 카운티 등의 지방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당시 연방 최저임금(4.25달러)보다 높은 6.10달러를 지급하고, 199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보다 50%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1994년 이래 미국 전역에 걸쳐 200개 이상의 연대모임이 결성되어 생활임금 요구 운동을 지속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도시 가운데 1/3이 생활임금법을 제정하였다. 2011년 7월 현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는 125곳이고, 현재에도 많은 지역에서 생활임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처음 병원에 도입되었던 생활임금이 정부기관, 대학, 호텔,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런던시를 비롯하여 11개 지자체, NHS 병원 4곳, 중앙부처 1곳, 대학 14곳, 런던시 등 공공기관과 대학은 물론 바클레이, HSBC, 모건 스탠리, 맥쿼리, KPMG 등 금융권과 소매회사 러시(Lush), 법률 회사 등 총 214개소의 사용자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런던시에서는 2001년부터 시민단체들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실현을 목표로 생활임금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002년 런던시 당국은 계약절차에 공정고용 조항을 도입하였고, 이후 런던시와 작업하는 민간계약자는 직원들에게 적어도 공공부문 임금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런던시는 200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2004년 런던시장선거 과정에서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이를 공약으로 받아들인 노동당 소속 후보인 켄 리빙스턴이 당선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2008년 당선된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시장도 생활임금제를 강화하였다. 2014년 런던시는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간당 8.8파운드(약 1만 5,256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존슨 시장은 중앙정부가 런던 생활임금을 전국에서 채택하도록 로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런던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공공 위탁사업체 외에 일반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HSBC 등의 금융회사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인 네슬레 영국·아일랜드는 2017년까지 청소와 요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노동

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원업체 등 계약을 맺은 1천 개 이상 기업에 런던시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곳에서 생기는 모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 혜택을 런던의 근로 빈곤층에게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일본에서도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조달과 지자체가 결정한 최저선 이상의 임금 지급을 연계한 공계약조례 제정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공계약조례를 제정한 노다시를 비롯한 19개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고용의 비중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저임금 서비스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4. 생활임금의 의의와 효과

생활임금 운동은 공공부문 노동자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기업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같은 특정 그룹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임금 요구의 기본 개념은 기업이 공공계약이나 보조금, 감세 등을 통해 지역 납세자가 내는 세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 회사는 종업원에게 괜찮은 임금(decent wage)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한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지역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공공자금에 의해 어떤 유형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저임금, 간접고용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제라는 지역 차원의 공공정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서울시의 정책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책임성 강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제는 적용대상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으며,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면 저임금 노동자 전반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생활임금제가 근로자 사기진작, 이직률 하락, 결근 감소, 생산성 증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제를 공공계약(용역, 민간위탁 등) 노동자에게로 확대하는 것은 최저가 낙찰 방식에 따라 저임금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를 억제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제는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내수회복을 위한 임금인상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 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실질임금의 정체,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 소득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세 둔화와 가계소득 비중 하락이 민간소비 확대에 주요 걸림돌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한계 소비성향은 고임금 노동자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높고, 기업의 이윤소득보다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높다. 가계소득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한 구매력 증가는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5. 향후 전망과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임금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저임금 고용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지역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은 이 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의 지급여력을 고려해야 하므로 적용대상에 한계가 있고 노동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지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생활임금의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급효과(ripple effect)가 커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 내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직접고용 노동자, 조달, 위탁, 하청계약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의 재정적 지원, 면세 혜택을 받는 민간업체, 시 소유의 택지나 건물에 입주하려는 민간업체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 여부의 모니터링과 불이행 시 제재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임금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 현장조사,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 등 관리·감독에 따라 생활임금의 준수율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 수준 결정 및 집행 확인, 준수 여부 감시·감독, 제도 개선 등 생활임금 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동·시민 사회단체들이 생활임금제의 정착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정책은 무엇보다 서울시가 지향하는 서울시의 노동·복지 및 경제 비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현실적으로 지자체 최저임금에 가까운 상황이고, 생활임금의 목적에 걸맞은 수준의 소득 보장과 적용 범위의 확대는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 목표 수준을 마련하여, 향후 이를 달성해나가는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황선자 · 이철, 2008, 『생활임금운동과 노동조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 황선자 · 이철, 2011, 『분배의 위기와 대안적 임금전략: 임금주도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3. 황선자, 2013. 11. 13, “해외 생활임금사례”, 참여연대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 토론회
4. 황선자, 2014. 10. 20,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의 의의와 과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 자료집

## 서울형 생활임금제 실행과 과제

최 봉\*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

cbong@si.re.kr



### 1.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으로,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양질의 주거·음식·교통·건강보험·통신·여가 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최근 경제·노동 분야의 최대 화젯거리로 떠오른 것이 최저임금인데,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말한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2013),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2014) 등

생활임금제는 1994년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하여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참여연대와 함께 공공부문의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자는 뜻을 모아 2013년에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노원구와 성북구는 각각 2014년 8월 18일과 8월 29일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다.

## 2. 국내 생활임금제 확산 추세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 이어 도봉구와 동작구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봉구는 2015년부터 직접고용 형식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생활임금제를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한 뒤 민간위탁 근로자에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4년 9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는데, 2014년 10월 답변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제 기 도입 및 도입예정 3구(노원·성북·서대문)와 찬성 11구를 합해 실질적으로 14개 구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구는 생활임금제 도입 의사에 반대로 분류되어 있으나 2015년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2016년 도입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 1> 생활임금제도 찬성여부 및 입장정리

| 구분                     |        | 자치구                                                              |
|------------------------|--------|------------------------------------------------------------------|
| 찬성                     |        |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총 11개 구) |
| 반대                     |        | 송파구, 중구(무응답) (2개 구)                                              |
| 언급<br>없음               | 사실상 반대 | 서초구, 강남구 (2개 구)                                                  |
|                        | 기타     | 광진구, 중랑구 (2개 구)                                                  |
| 답변연기                   |        |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5개 구)                                  |
| 기 시행 혹은<br>2015년 시행 확인 |        | 노원구, 성북구, 서대문구 (3개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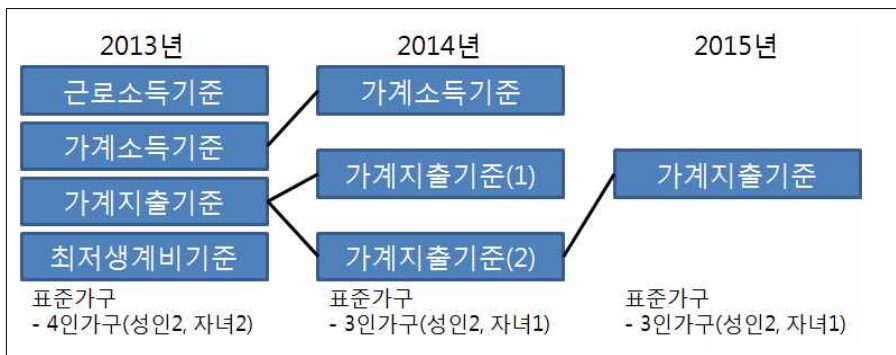
주 : 참여연대 보도자료, 2014. 10. 07. 「서울시 11개구, 생활임금제도에 찬성하거나, 도입의사 밝혀」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성공한 후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 시행 후 2015년에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유성구가 대전·충청권역 최초로 2015년 7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서구와 광산구가 2015년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며, 앞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3. 서울형 생활임금제 실행

#### 1)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sup>1)</sup>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은 2013년부터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013년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가계소득·가계지출·최저생계비 모델을 제시하였고, 2014년에는 3인 가구를 바탕으로 모델을 재수립하였으며, 2015년에 최종적으로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을 근간으로 하면서 서울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서울연구원 생활임금 산정기준

1)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2013),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2014) 참고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액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동향조사 3인 가구의 가계지출 평균의 50%인 1,638,363원(a)에 주거비(3인 가구 최소주거기준 36㎡를 감안한 실거래가 추정 값 600,000원(b)), 사교육비(서울지역 평균 사교육비의 50%인 164,000원(c))를 반영하여 표준가구의 월평균 지출 값을 산정하였다. 표준가구의 근로시간(전일제 209시간, 시간제 156시간)을 감안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6,582원이 계산된다( { (a) + (b) + (c) } / 365시간 = 6,582원).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실제 적용을 위해 가계지출 모델의 산정 값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 1.6%를 가산한 금액인 6,687원을 2015년 생활임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월 급여 기준으로 1,397,583원이다.

## 2)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2015년 2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급 6,687원을 올해의 서울시 생활임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근로자로 결정하였으며 적용대상 인원은 266명, 소요예산은 3억5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을 추진하여 약 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임금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근로 및 뉴딜형 일자리 사업 종사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공근로는 임시적 일자리의 성격이 강하고, 전국 단위로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뉴딜형 일자리는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등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일자리라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 이후에는 용역·민간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도 포함할 예정으로 법적·제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4.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라는 상징성과 함께 제도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은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첫발을 내디딘 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제도의 원활한 실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서울형 생활임금제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가계지출 모형의 적절성, 생활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의 타당성 여부 등 서울형 생활임금제 실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모델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제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간접고용근로자까지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생활임금제 도입의 진정한 목표는 이 제도가 민간부문의 동참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이 임의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생활임금제 도입은 민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생활임금이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영국 런던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최봉·김범식, 2013.7,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 최봉, 2014.2,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 서울연구원



SEOUL ECONOMIC BULLETIN

# 생생리포트

생  
생  
리  
포  
트

## ■ 한국의 생활임금 - 현장의 목소리

정의영(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 한국의 생활임금 - 현장의 목소리

정의영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altophone@si.re.kr

- I. 들어가며
- II. 서울시의 생활임금
- III. 성북구의 생활임금
- IV. 부천시의 생활임금

\* 이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 I. 들어가며

2013년 1월 전국 최초로 성북구에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근 들어 생활임금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이미 성북구, 도봉구, 부천시, 수원시 등에서 생활임금제가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서울시 역시 2015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 대전 유성구 등 지역 자치단체도 생활임금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거나 검토하는 중이다.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해진 실질임금 수준의 정상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가 활발하게 논의·시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생활임금제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우리 사회의 이해와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생활임금제가 사회에 안착되기까지 노동계, 학생, 시민단체,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20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제 태동단계에 있는 국내의 생활임금제가 일시적, 형식적 수준의 정책 실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사회 공공·민간부문의 근로조건 개선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내용과 의미,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생생리포트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 목표, 향후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생활임금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전국의 지자체 중 지역적, 정책적 특징들을 고려하여 정책에 관한 상호 보완적인 함의 도출이 가능한 3개의 지자체, 즉 서울시청, 성북구청, 부천시청의 간부들을 인터뷰하였다. 이 생생리포트가 생활임금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기존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II. 서울시의 생활임금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서울시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향후 타 지자체들의 생활임금제 도입과 시행에 있어 중요한 표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박문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장과 3월 11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1.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를 어떠한 배경에서 도입하게 되었나요?

▶ 박문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장 (이하, 단장님) : 2014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월 108만 원 정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월 가계지출 평균인 132만 원의 82%에 불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최근 ‘가계소득 증대 및 내수 진작을 통한 소득주도형 성장’ 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임금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활발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하에서 사회적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 지역의 높은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여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가계 재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에 맞물려 중앙정부도 최근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인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생활임금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2.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내용과 적용 대상,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단장님**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서울시의 주거비, 교육비, 물가 상승률 등의 실정을 반영한 ‘서울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적정 생활임금 수준을 산출하였습니다.

2010년 조사 결과 서울시의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입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정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취학 아동 1인으로 구성)를 기준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산출하였고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6,68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말 기준 서울시 3인 가구 평균 가계 지출(1,638,363원)에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3인 가구 최소 주거비<sup>1)</sup>와 평균 사교육비<sup>2)</sup>의 50%를 합하여 서울 생활에 필요한 월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것을 3인 가구의 월 총 노동시간인 365<sup>3)</sup>시간으로 나눈 후, 마지막으로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1.6%)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1단계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이며, 내년에는 서울시가 발주하고 있는 공공조달분야(용역, 민간위탁)까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TF를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실태조사를 통해

1) 600,000원 / 36㎡ 전월세 실거래가 평균

2) 164,000원

3) 365(월 총 노동시간)=209(정규 근로자 노동시간)+156(시간제 근로자 노동시간)

추산한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2014년 기준 266명이었으며, 2015년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5억 5천만 원이며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적용 대상이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상당수의 근로자가 생활임금 이상의 처우를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입니다.

### 3.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단장님** :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 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에 많은 적진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취약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서울시가 임금 수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솔선수범하여 근로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사 문화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생활임금은 인건비의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사용자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소득 상승을 통한 내수 진작이 기업 매출 상승이라는 선순환의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을 꼭 일방적인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생활임금제 운영에 지출되는 예산을 복지비 및 사회 안정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사회 투자이자 사회 발전을 이끄는 장기적인 노력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생활임금제 적용/비적용 근로자 간의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 문제, 근로자 노동 공급 유인 왜곡 문제, 공공-민간부문 간의 근로조건 격차 심화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인가요?

▶ **단장님** :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서울시 소속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포함하여 기본적 생활임금을 산정하되, 기타 수당의 경우 생활임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 서울시 소속 근로자들은 이미 보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적용/비적용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부차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 적용 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5. 간접고용, 민간부문까지 확대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계획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생활임금의 사회 정착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하였는데, 제도 정착을 위해 어떤 장기적 계획을 준비하고 있나요?

▶ **단장님** : 우선, 서울시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는 현행 법령상 생활임금제를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까지 생활임금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계약 입찰 시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하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간접고용 부문 생활임금 의무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상호교류 MOU 체결 등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현장 부서에서 생활임금제를 운영

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임금 중장기 정책 발전 비전을 마련하고 서울형 생활임금 민간 확산 전략을 수립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구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아직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은 자치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임금제는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임금제 자체에 대한 찬, 반이 나뉠 수 있을 것이며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더라도 보장하는 임금 수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둔 생활임금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서울시의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6. 생활임금제 이외에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서울시의 다른 정책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진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2015년 1월까지 비정규직 7,300여 명 중 5,600여 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1,7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2018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고용조건, 임금, 노동시간이라는 근로 조건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노동정책 및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노동기본계획’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맨’을 두어 근로자들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근로자·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인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생활임금제를 준비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단장님**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를 준비해오며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유·무형적 인프라, 연구, 경험, 노하우 등을 타 지자체들과 흔쾌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제가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타 지자체들과 상호 협력의 기반 위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III. 성북구의 생활임금



성북구청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올해부터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공공 부문의 간접고용에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자치구 단위 생활임금제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성북구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한기섭 성북구청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 정책팀장을 3월 11일 인터뷰하였다.

1. 성북구청이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섭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이하, 팀장님)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식상 정책임금이나 사실상 노사 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교섭임금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나아가 임금의 하한이자 강요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임금의 1/3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소득불평등

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경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시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임금 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국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공공부문에 한하지만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이를 통해 민간부문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하여 임금의 현실화를 이루는 것이며, 근로조건 개선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2. 성북구청 생활임금제의 추진 과정, 적용 대상, 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요?

▶ **팀장님** : 성북구청의 생활임금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 8 : 생활임금 도입 캠페인 제안(참여연대)

2013. 1 : 전국 최초, 생활임금 시행(행정명령)

2013. 5 :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13. 11 :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 토론회 개최

2014. 9 : 생활임금 조례 공포(법규명령)

2014. 11 : 2015년 성북구 생활임금 결정·고시

성북구가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발표한 서울시 물가 조정분 16%의 절반인 8%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성북구 생활임금제는 2013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의 근로자 중 생활임금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11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올해부터 성북구와 계약을 맺는 민간 위탁·공사·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 및 그 하수급인(기간제 근로자 포함)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총 183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성북구청의 예산 규모는 2013년도 1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하여 2015년에는 2억 7천만 원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 1> 성북구 생활임금 현황

(단위 : 원)

| 연 도   | 5인 이상<br>노동자 평균<br>임금 50%(①) | 서울시 생활<br>물가 1/2<br>(②노동자 평균<br>임금 8%) | 월 급여 비교         |           |                          | 시간급 비교   |          |            |
|-------|------------------------------|----------------------------------------|-----------------|-----------|--------------------------|----------|----------|------------|
|       |                              |                                        | 생활임금<br>(③=①+②) | 최저임금<br>④ | 최저임금<br>대비인상액<br>(⑤=④-③) | 생활<br>임금 | 최저<br>임금 | 최저임금<br>대비 |
| 2013년 | 1,170,513                    | 187,282                                | 1,357,795       | 1,015,740 | 342,055<br>(34% 증)       | 6,490    | 4,860    | 34% 증      |
| 2014년 | 1,243,907                    | 197,585                                | 1,432,492       | 1,088,890 | 343,602<br>(32% 증)       | 6,850    | 5,210    | 31% 증      |
| 2015년 | 1,288,921                    | 206,227                                | 1,495,148       | 1,166,220 | 328,928<br>(28% 증)       | 7,150    | 5,580    | 28% 증      |

### 3. 생활임금제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임금제 효과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 **팀장님** : 기본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 대다수가 근로취약 계층이자 저임금 계층이기 때문에 생활 임금 적용에 따른 소득 향상은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줍니다. 해외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후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Wills and Linneker, 2012)가 보고되는 등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국내·외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성북구청 생활임금제는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 및 내수 진작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 방향과도 맞고 중앙 정부의 경제 정책 실행에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직 성북구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직무 만족도 상승, 사기 진작, 소속감 고취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근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데, 일례로 전국 32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지방공기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에게는 생활수준 향상 및 근로 자존감 회복, 사용자(성북구청)에게는 양질의 노동 서비스 향유라는 상호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 4. 생활임금제가 초과근무 기피와 같은 노동 공급의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 시키진 않나요?

▶ **팀장님** : 생활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재수당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수당 항목에 초과근무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생활임금제가 최저 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높은 수준의 소득까지 보장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임금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초과근무를 거부하고 최저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공단과 재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근무 특성상 발생하는 초과근무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초과 근무 기피 현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컨대, 생활임금제가 노동 공급의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 5. 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라 생활임금제의 존폐가 달려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법적, 재정적)을 담보하기 위한 성북구의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팀장님** : 성북구청은 생활임금에 대한 지속적 추진 의지를 가지고 2014년 9월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생활임금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라 제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성북구청의 예산은 아직까지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성북구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매년 9월에 생활임금 심의위원회(7명)를 운영하여 물가 및 시 재정 상황에 맞게 생활임금 지원 규모를 신중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 확보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6.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자치구로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나요?

▶ **팀장님** : 현재 생활임금을 시행하면서 자치구별로 적용 방법, 금액, 대상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일한 서울시 소속 자치구이지만 각 구의 생활임금 수준이 제각기 다르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은 정책임금이며 산정 시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체적인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 및 생활임금제 기 시행 자치구들 간 논의를 통해 생활임금 산정 및 운영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구들에게 생활임금제의 벤치마크 모델로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생활임금제의 지속적인 실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임금제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친노동자 정책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비전이자 투자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IV. 부천시청



부천시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오랜 합의 과정을 거쳐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 주도로 제도가 도입된 타 지역의 경우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부천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전부터 근로자 처우에 관한 논의가 지역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생활임금조례가 여·야의 공동발의로 추진되는 등 제도의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모범적인 이해관계 조정의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부천시 생활임금을 알아보기 위해 이상훈 부천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고용노동팀장과 3월 12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1. 부천시 생활임금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부천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고용노동팀 팀장 (이하, 팀장님) : 부천은 영세기업 밀집지역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99% 가까이 되며 저부가가치 산업위주로 지역 경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천시는 실업 및 고용 불안정,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일찍부터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력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생활임금제는 이와 같은 노사민정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실행에 옮겨진 정책입니다.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데 있어 3가지 배경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민간 위탁 용역기관의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임금을 고려하게 되었고, 둘째는 지자체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 제도가 제안되었으며, 마지막 셋째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 말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본 협의회에서 처음 생활임금제도가 제기, 의결되었고 이후 2년간 8차례에 걸쳐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 생활임금제 내용과 적용 범위, 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팀장님** : 생활임금제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천시 생활임금은 OECD 권고사항인 도시 근로자 평균급여의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050원을 기준으로 6개 적정구간 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부천시 소속 근로자 378명에게 적용되었고 2015년에는 부천시 소속 근로자 432명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9명을 합하여 총 481명에게 적용됩니다. 2015년 생활임금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6천만 원입니다.

## 3. 부천시의 경우 생활임금제 도입에서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생활임금제 도입과 시행에서 이들의 역할을 소개한다면?

▶ **팀장님** :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는 1999년 5월 설립되어 올해 설립 15년째를 맞고 있으며, 지역 노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부천지역 노동·경제·고용 등의 이슈에 대



한 사회적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우수사례를 상당수 만들어 내고 있으며 대표적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 노사 공동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노사 공동 훈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OECD에도 모범사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자원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고용-복지종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의 핵심 노동 의제인 ‘부천형 강소기업 안착 방안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생활임금제 역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로 제도 도입 이후에도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 및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노사민정 협의회 산하에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이며 매년 노사민정 위원회에서 노사민정 간 협의와 의결을 통해 (차년도)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신고센터는 생활임금 지급 이행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올해 생활임금 적용자를 대상으로 제도 모니터링 및 수요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4. 생활임금제 적용/비적용 근로자 간의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나요?

▶ **팀장님** : 저희가 알기로는 공공부문의 근로조건 격차 심화는 주로 고임금 등을 지급받는 근로계층에서 발생하며 저임금근로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적용대상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생활임금제 적용 수준을 구간별로 다양하게 책정하여 제도 시행과 관련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제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생활임금제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위와 같이 중앙정부의 노동, 일자리 정책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생활임금제 개선, 발전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임금제 이외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부천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 2015년 3월 2일에 부천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본 협의회에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확대(민간 위탁용역기관 소속 근로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민간위탁 용역기관 소속 근로자의 임금 실태 조사 및 소요경비 산출 등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작업을 향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2016년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천시는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적용 기업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 지역적 공감 확산 방안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부천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를 2012년 개설하고 이 기관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지, 법률 상담,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최근 많은 지자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로서 전해주고 싶은 경험이나 교훈이 있다면?

▶ **팀장님** : 생활임금의 제안부터 도입에 이르는 전 과정은 여러 이익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부천시는 2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꾸준히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생활임금 도입에서 지역 노사민정 간 협의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더 넓은 부문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운영 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부천시가 생활임금제라는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제도를 실제로 도입할 때 그 의미와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활용·참고 가능한 연구나 방법, 자료 등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당시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와 이슈로 활용되고 있었고, 부천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정책 설계에 실제적으로 반영할만한 내용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여러 자치구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 2년여가 지났고 앞으로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 내 활용가능한 자원의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나 여전히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나 활용 가능한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서 생활임금 안착을 위한 법적 검토, 개선 방안, 실제 활용 과정에 대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이 단지 선거를 위한 공약이나 허울뿐인 형식적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하에 제도 도입 후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EOUL ECONOMIC BULLETIN

# 인포그래픽스

인  
포  
그  
래  
픽  
스

## ■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장윤선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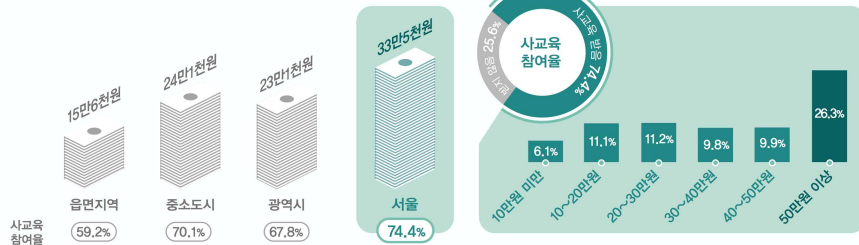
#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연구위원 [dhcho@si.re.kr](mailto:dhcho@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mailto:changys@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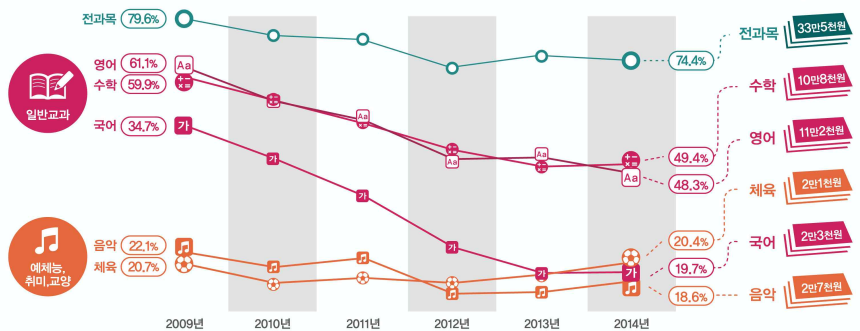
##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서울의 학생 중 74.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천원  
국·영·수 등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하락 추세나, 예체능은 참여율 하락이 소폭에 그침

서울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년간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과목 5순위)



**서울의 학생 중 74.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천 원  
국·영·수 등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하락 추세가 완연하나,  
예체능은 참여율 하락이 소폭에 그침**

- 2014년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천 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74.4%로 전국에서 서울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천 원이며, 이는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읍면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
  -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74.4%로, 이 또한 읍면지역에 비해 15.2%p 높음
  - 서울 학생 중 1/4 이상인 26.3%가 50만 원 이상을 사교육에 지출
- 서울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2009년 79.6%에서 2014년 74.4%로 5년간 5.2%p 감소
  - ‘국어’의 경우 지난 5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15%p 급락하는 등 일반교과의 참여율 하락 추세가 완연하나 예체능의 경우 참여율 하락이 소폭에 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4%, 32.2%로 두 과목의 합은 전체 사교육비의 65% 이상을 차지

<표 1> 2014년 권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단위: 만 원, %)

|                                       |                 | 2014년 |      |      |      |      |
|---------------------------------------|-----------------|-------|------|------|------|------|
|                                       |                 | 전체    |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
| 월평균 사교육비<br>(만 원)                     |                 | 24.2  | 33.5 | 23.1 | 24.1 | 15.6 |
| 사교육 참여율(%)                            |                 | 68.6  | 74.4 | 67.8 | 70.1 | 59.2 |
| 월평균<br>사교육비<br>계층별<br>구성<br>분포<br>(%)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사교육<br>받지<br>않음 | 31.4  | 25.6 | 32.2 | 29.9 | 40.8 |
|                                       | 10만 원<br>미만     | 8     | 6.1  | 8.4  | 8    | 9.2  |
|                                       | 10-20만 원<br>미만  | 13.1  | 11.1 | 13.1 | 12.7 | 16.2 |
|                                       | 20-30만 원<br>미만  | 13.7  | 11.2 | 13.6 | 14.2 | 15.2 |
|                                       | 30-40만 원<br>미만  | 11.3  | 9.8  | 11.7 | 12.4 | 9.1  |
|                                       | 40-50만 원<br>미만  | 8.3   | 9.9  | 8    | 9    | 5.1  |
|                                       | 50만 원<br>이상     | 14.4  | 26.3 | 13.1 | 13.9 | 4.5  |

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이며, 중소도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의 洞지역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14)

〈표 2〉 서울 5년간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및 2014년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 원)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                           | 사교육<br>참여율 | 사교육<br>참여율 | 사교육<br>참여율 | 사교육<br>참여율 | 사교육<br>참여율 | 사교육<br>참여율 | 월평균<br>사교육비 |
| 서울 전체                     | 79.6       | 77.5       | 77.0       | 73.5       | 75.0       | 74.4       | 33.5        |
| 과목: 일반교과<br>사교육           | 71.2       | 68.9       | 67.3       | 63.0       | 63.5       | 62.4       | 26.8        |
| 국 어                       | 37.4       | 33.4       | 28.9       | 22.7       | 19.6       | 19.7       | 2.3         |
| 영 어                       | 61.1       | 57.0       | 54.7       | 50.0       | 50.2       | 48.3       | 11.2        |
| 수 학                       | 59.9       | 57.1       | 54.3       | 51.1       | 49.1       | 49.4       | 10.8        |
| 사회, 과학                    | 24.1       | 20.5       | 17.0       | 14.6       | 10.4       | 10.2       | 1.2         |
| 제2외국어, 한문,<br>컴퓨터         | 12.9       | 11.7       | 8.9        | 6.5        | 5.3        | 4.6        | 0.3         |
| 논 술                       | 10.5       | 9.5        | 9.8        | 9.4        | 10.5       | 9.2        | 1.0         |
| 과목:<br>예체능, 취미, 교양<br>사교육 | 39.2       | 36.5       | 37.2       | 33.6       | 36.1       | 37.0       | 6.5         |
| 음 악                       | 22.1       | 20.3       | 21.4       | 17.1       | 17.3       | 18.6       | 2.7         |
| 미 술                       | 9.0        | 8.1        | 7.9        | 7.0        | 9.0        | 8.7        | 1.2         |
| 체 육                       | 20.7       | 18.4       | 19.0       | 18.4       | 19.4       | 20.4       | 2.1         |
| 취미·교양                     | 4.9        | 4.1        | 3.5        | 4.3        | 3.8        | 3.7        | 0.5         |

주: 취업관련 사교육 제외하였으며,  는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과목 5순위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 경제동향

##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장윤선 연구원(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정의영 연구원(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 | 요 · 약 | 1월 서울의 경제동향

### 생 산

- 서울의 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9.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여 생산 부진
- 1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3.1% 증가

### 소 비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590억 원으로 전국(6조1,786억 원)의 33.3% 차지
- 1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하여 소비 부진

### 고 용

- 서울의 1월 취업자는 51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0.2%) 증가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하여 고용 사정 조금 더 악화

### 물 가

- 2015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2(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
- 전기·수도·가스(-3.1%), 신선식품지수(-2.5%)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

### 부 동 산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와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발생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상승한 100.2 기록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3% 상승한 110.6 기록. 이는 전세 매물의 부족, 재건축 이주 시작, 방학으로 인한 학군 수요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

### 금 융

- 서울의 1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96조 5,103억 원으로 전월 대비 0.79% 증가
- 서울의 1월 가계대출은 189조 6,941억 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는 2,492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 부도법인 수는 21개로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하여 신설/부도법인 비율 상승
- 서울의 1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 전월 대비 각각 31.7%, 2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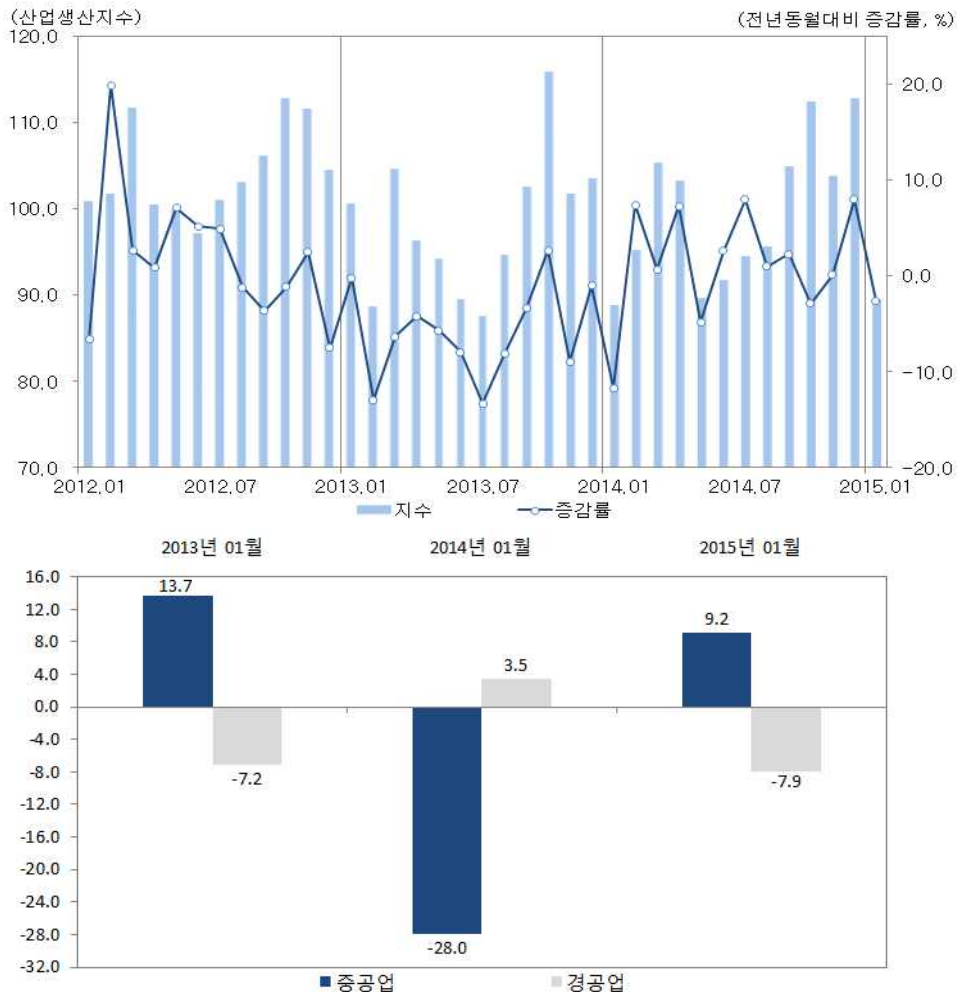
### 수 출 입

- 서울의 1월 수출은 47.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월 수입은 128.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품목별로는 원유,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 생 · 산 |

## ■ 서울의 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9.6(201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 경공업은 7.9% 감소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의료정밀과학(40.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5.0%), 인쇄 및 기록매체(10.2%) 등은 증가, 기타제품(-24.1%), 기계장비(-18.0%), 의복 및 모피(-10.4%) 등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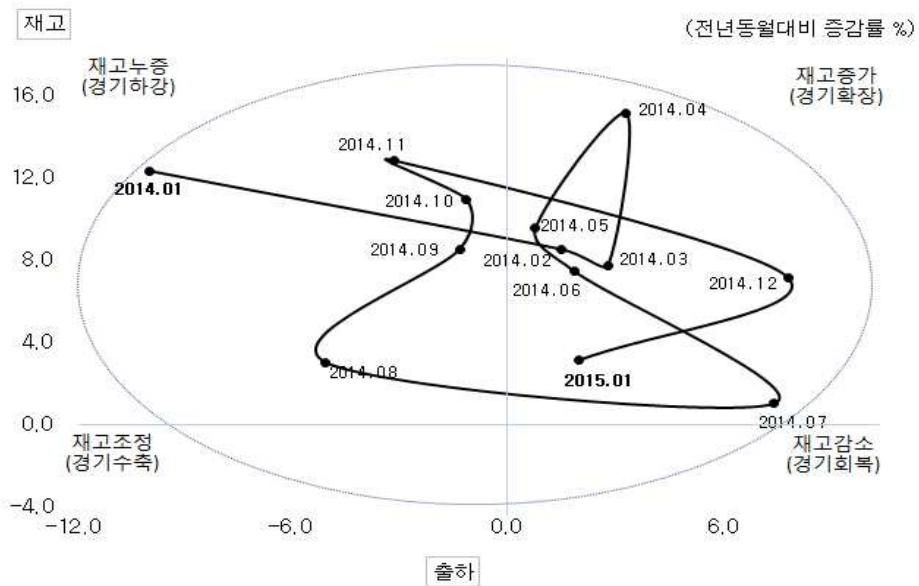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 출하 · 재고 순환 |

### ■ 서울의 1월 제조업 출하,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출하지수는 93.4(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
- 서울의 1월 재고지수는 125.9(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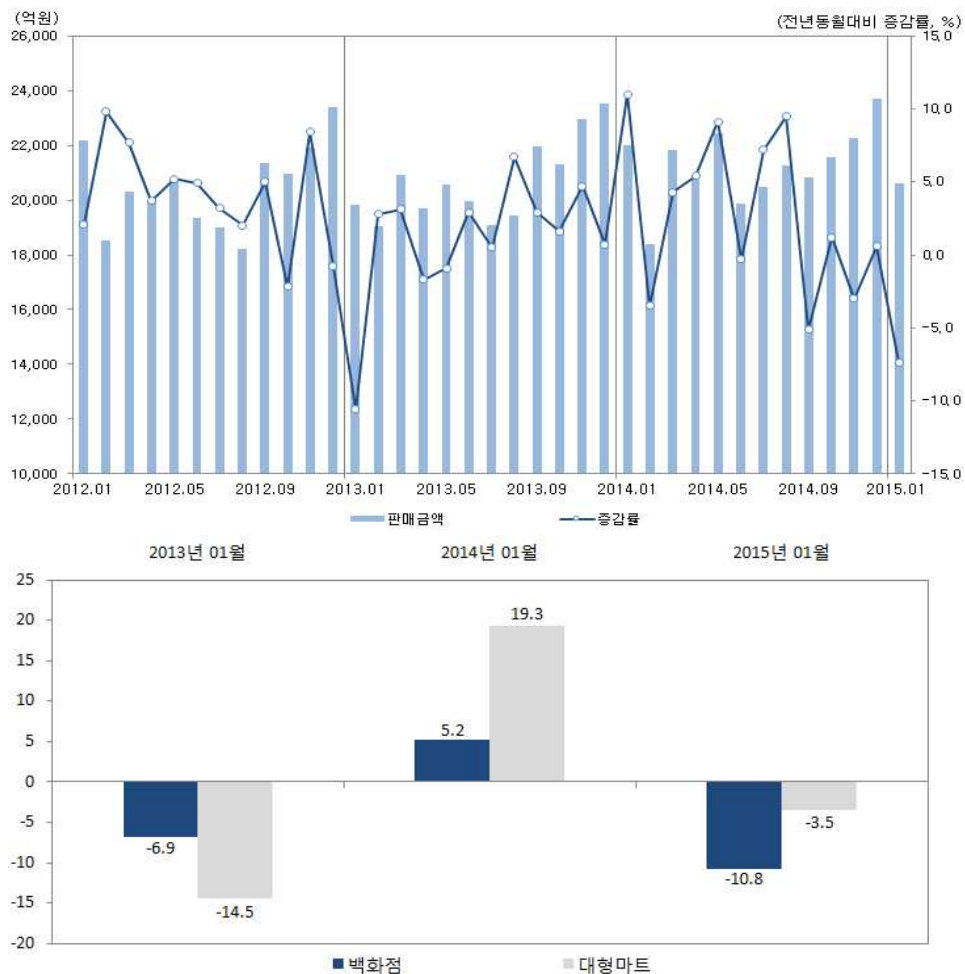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 | 소 · 비 |

##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590억 원으로 전국(6조 1,786억 원)의 33.3%
- 백화점 판매액은 1조 432억 원으로 전국(2조 4,205억 원)의 43.1%,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58억 원으로 전국(3조 7,581억 원)의 27.0%를 차지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7로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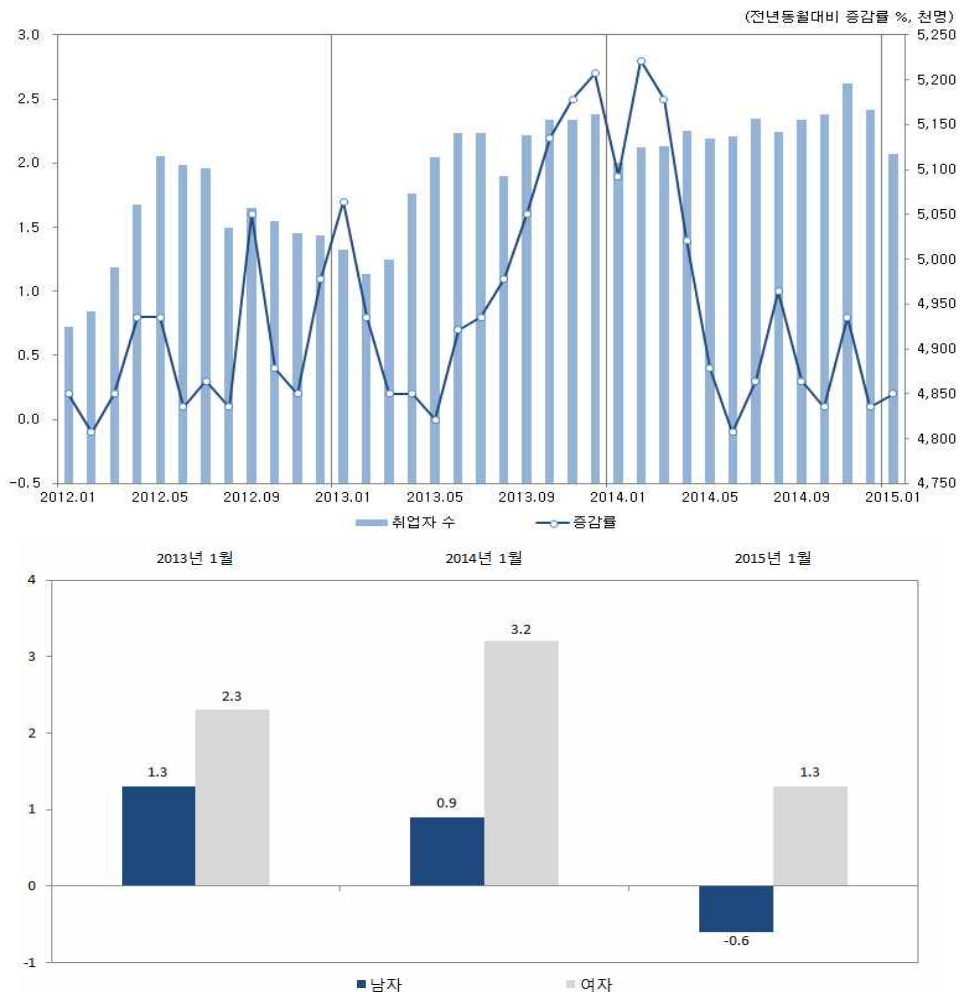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 취·업·자 |

## ■ 서울의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

- 서울의 1월 취업자는 51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0.2%)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8천 명(-0.6%p) 감소하고, 여자는 228만 3천 명으로 2만 9천 명(1.3%)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이 6만 2천 명(4.4%), 건설업이 2만 8천 명(9.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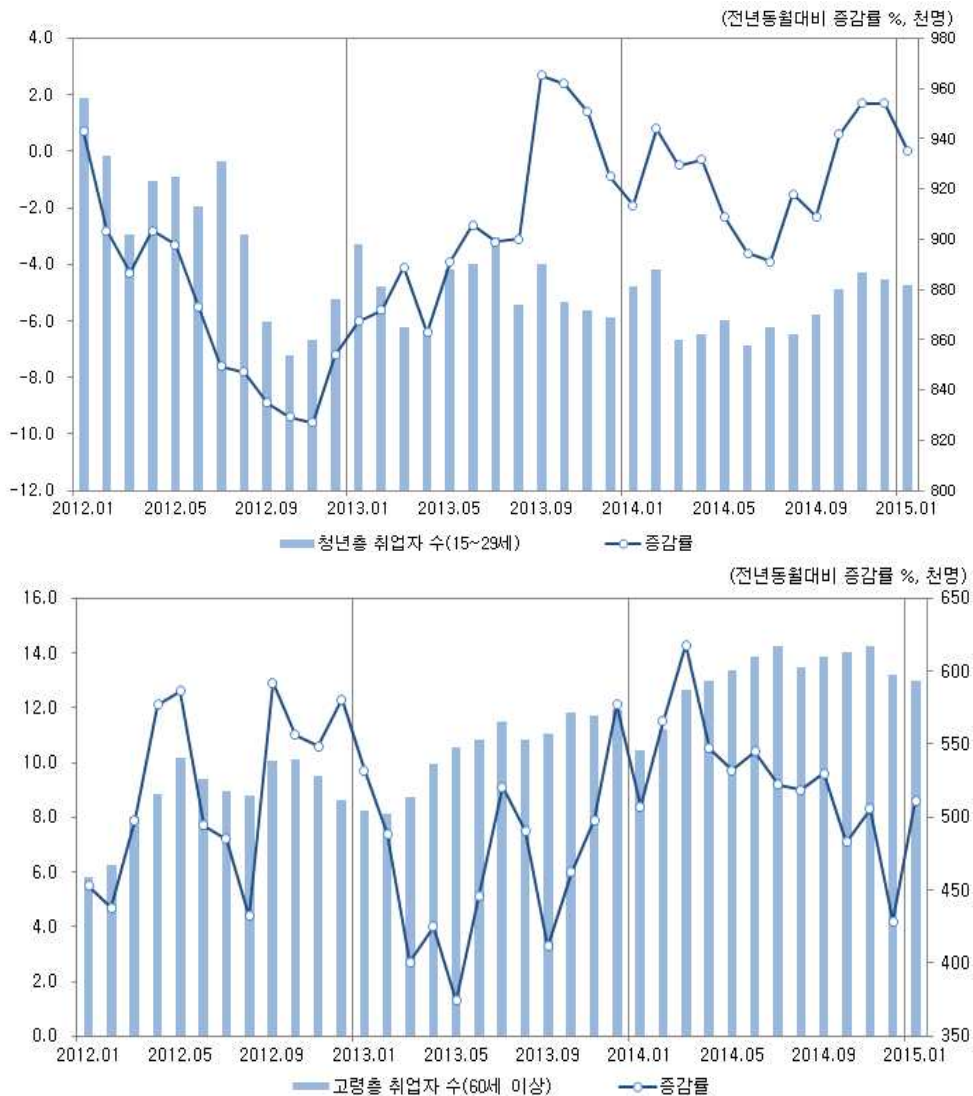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 서울의 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

- 서울의 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8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 서울의 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해 지속적 증가세 시현
- 반면 최근 3개월의 고령층 취업자 수는 11월 61만 7천 명에서 1월 59만 3천 명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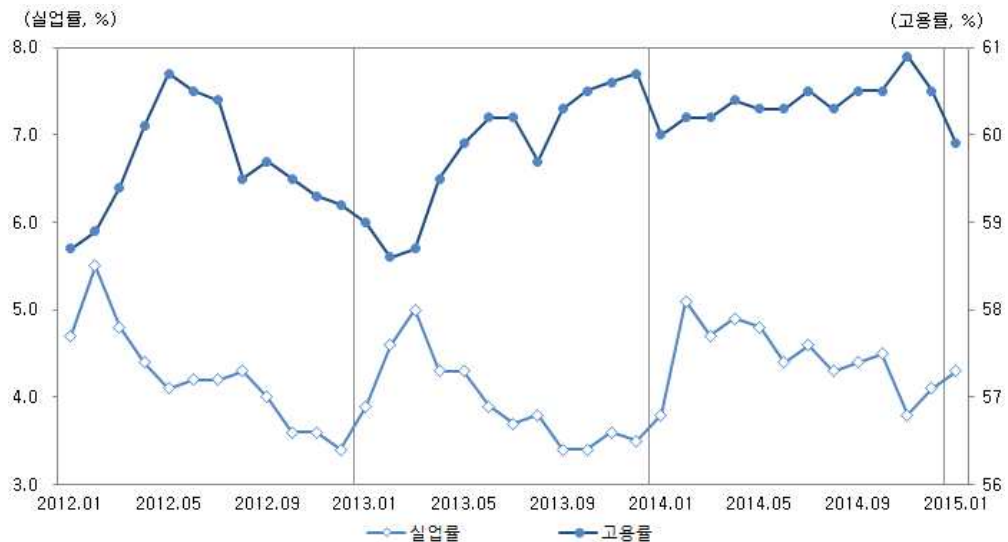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 여자는 51.3%로 0.4%p 증가
  - 2014년 1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8.7%)보다 1.2%p 높은 수준
- 서울의 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2월 실업자는 2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14.8%)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여자는 4.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 2015년 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8%)에 비하여 0.5%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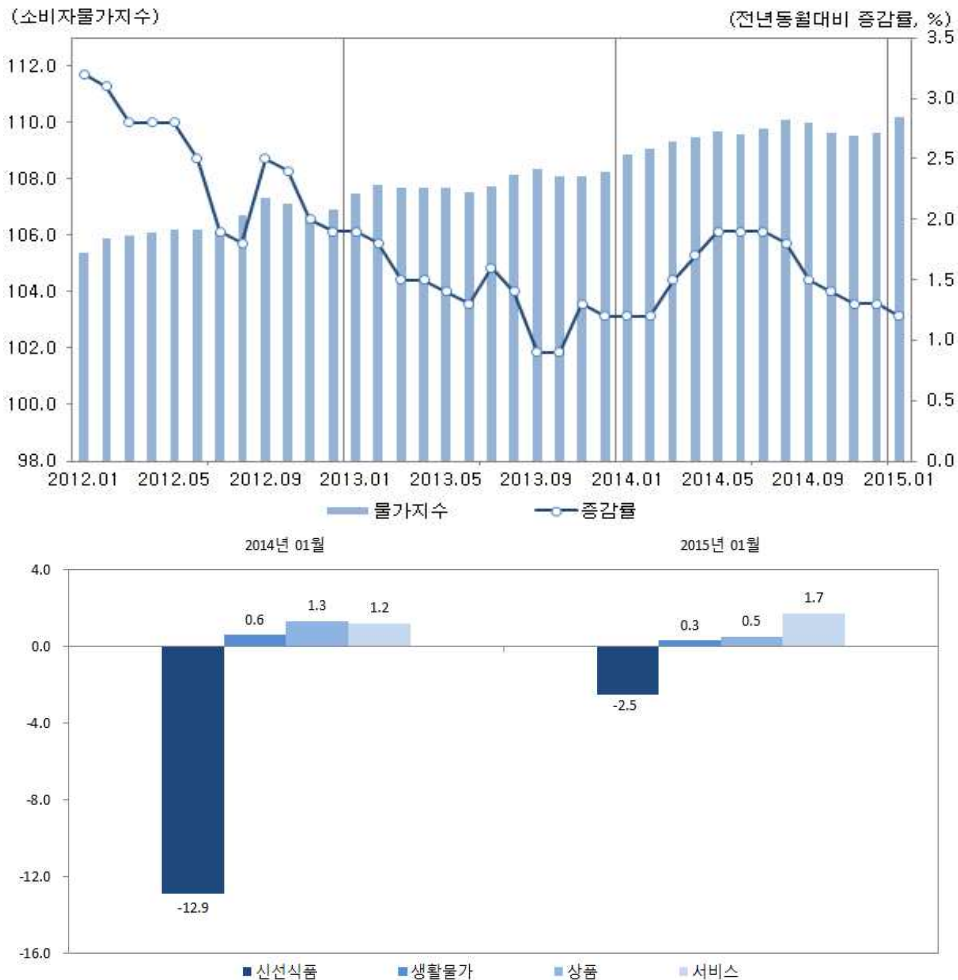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 물 · 가 |

## ■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

- 2015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2(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전기·수도·가스(-3.1%), 신선식품지수(-2.5%)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2015년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2로 전월 대비 0.05%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0.06% 상승한 강남지역은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가, 전월 대비 0.05% 상승한 강북지역은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상승지역: 종로구(0.34%), 강남구(0.19%), 강동구(0.18%), 중구(0.15%)
- 주요 하락지역: 용산구 (-0.16%)

## ■ 전국의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8로 전월 대비 0.13% 상승함. 이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발생 및 부동산 3법 국회통과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임. 5개 광역시, 수도권,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28%, 0.09%, 0.07%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 ■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매매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상승

- 평당 평균 매매가격(1,664만 원), 매매거래건수(6,849건)는 각각 전월 대비 0.41%, 2.6% 상승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2015년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0.6으로 전월 대비 0.38% 상승함. 전체적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재건축 이주 시작에 따라 전세수요가 증가한 강동구(0.82%)와 재건축 이주, 직장인 수요, 방학을 맞이한 학군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서초구(0.76%)의 상승이 주목할 만함. 강남(0.41%), 강북지역(0.35%) 모두 전월 대비 상승
- 주요 상승지역: 강동구 (0.82%), 서초구 (0.76%), 성북구(0.62%), 종로구(0.59%)

### ■ 전국의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6% 상승한 109.0이며 이는 월세 선호 및 전세 매물 부족의 영향임. 5개 광역시, 수도권,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27%, 0.33%, 0.06%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 ■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전세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1,064만 원), 전세거래건수(10,330건)는 각각 전월 대비 1.3% 증가, 16.1% 감소

## | 가 · 계 · 대 · 출 |

## ■ 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96조 5,103억 원)은 전월 대비 0.79%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98조 3,994억 원)과 비예금은행(98조 1,109억 원)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5% 증가, 6.6% 감소

## ■ 1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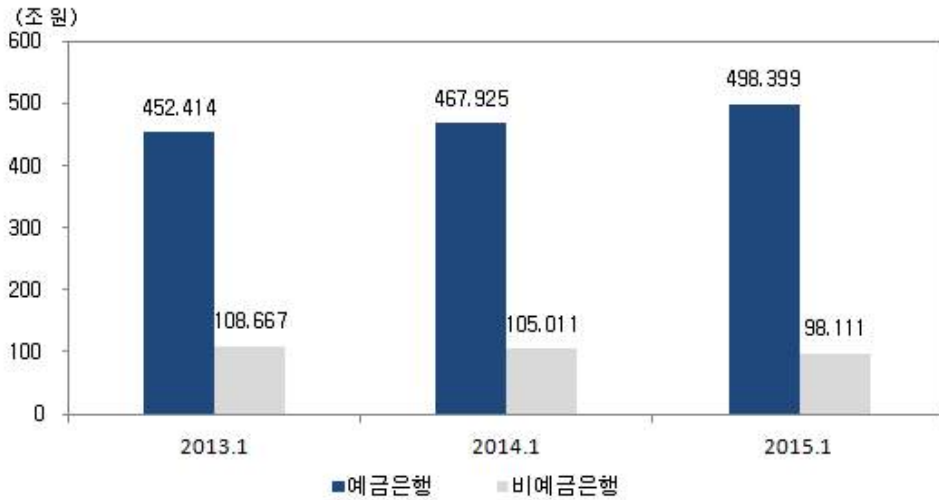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1,638조 7,313억 원)은 전월 대비 0.62% 증가
- 그 중 예금은행 잔액은 1,258조 3,009억 원이며 비예금은행 잔액은 380조 4,304억 원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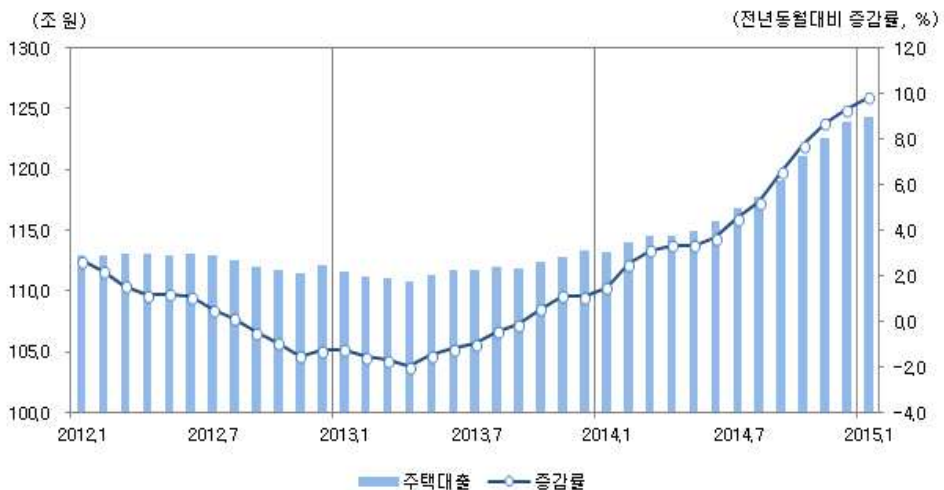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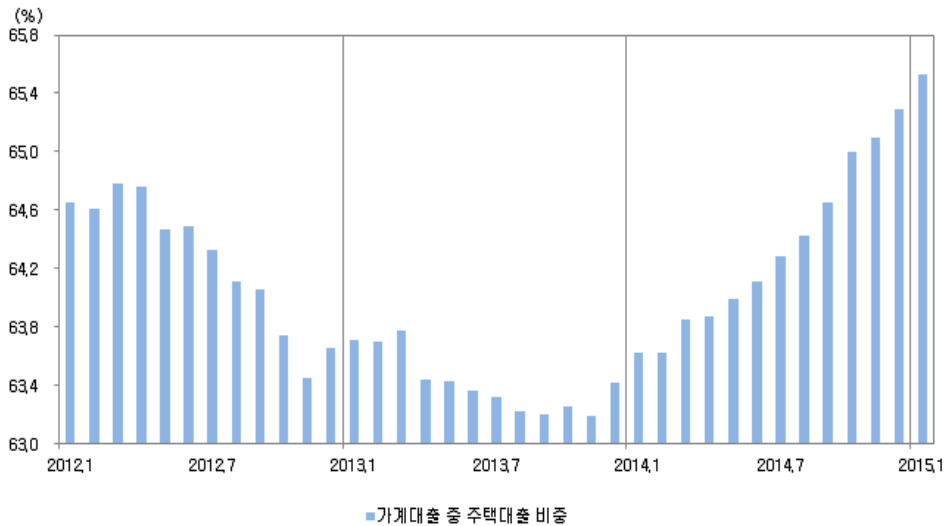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89조 6,941억 원)은 전월(189조 6,801억 원) 대비 소폭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24조 3,163억 원)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65.5%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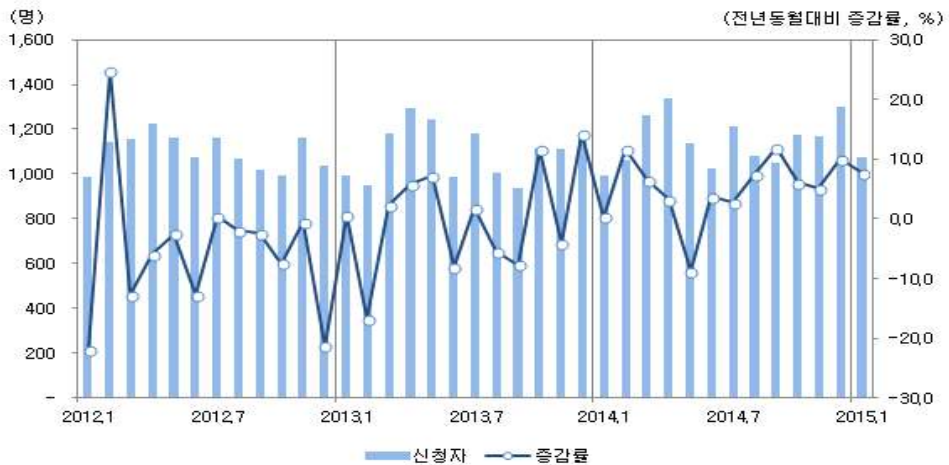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 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1,072명)는 전월(1,302명) 대비 감소
-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 처리 건수(21건)는 전월과 동일, 전년 동월 대비 19건 감소하였 으며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률은 1.8%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 신·설·및·부·도·법·인 |

### ■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 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492개로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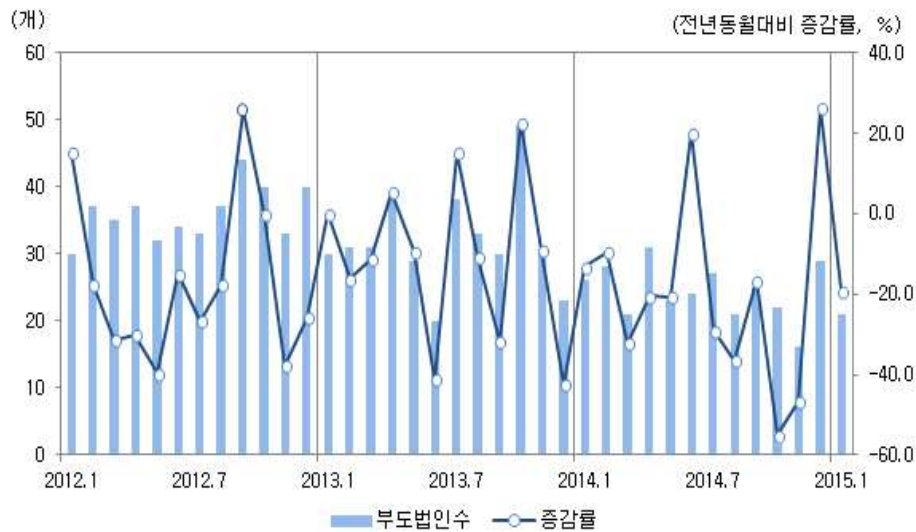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 ■ 서울의 1월 부도법인 수는 전월 대비 감소

- 1월 부도법인 수는 21개로 전월(29개)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
- 업종별 부도업체 수는 제조업 7개, 서비스업 12개, 건설업 2개씩으로 전월 대비 각각 0개, 3개, 3개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 7.7% 감소, 71.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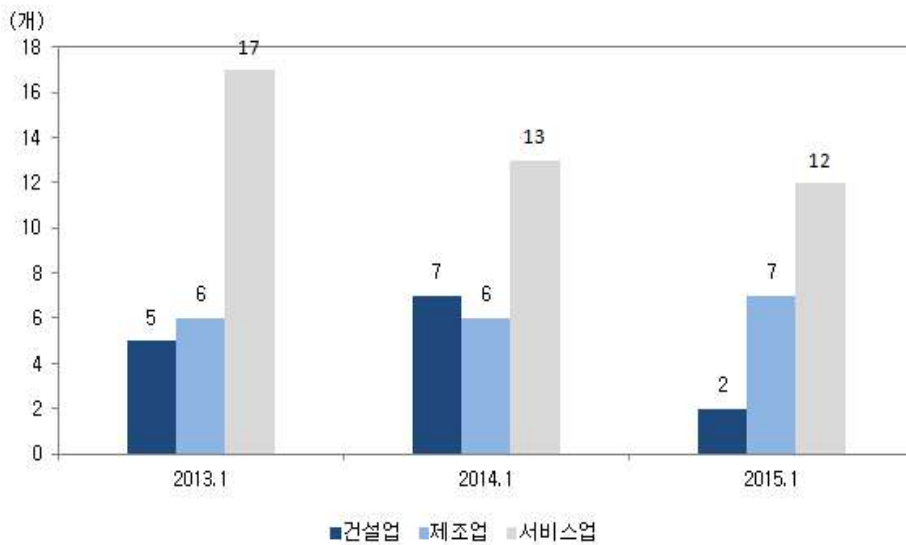
### ■ 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보합, 신설 / 부도법인 비율은 전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서울의 신설법인 / 부도법인 비율은 118.7로 전월 86.9 대비 상승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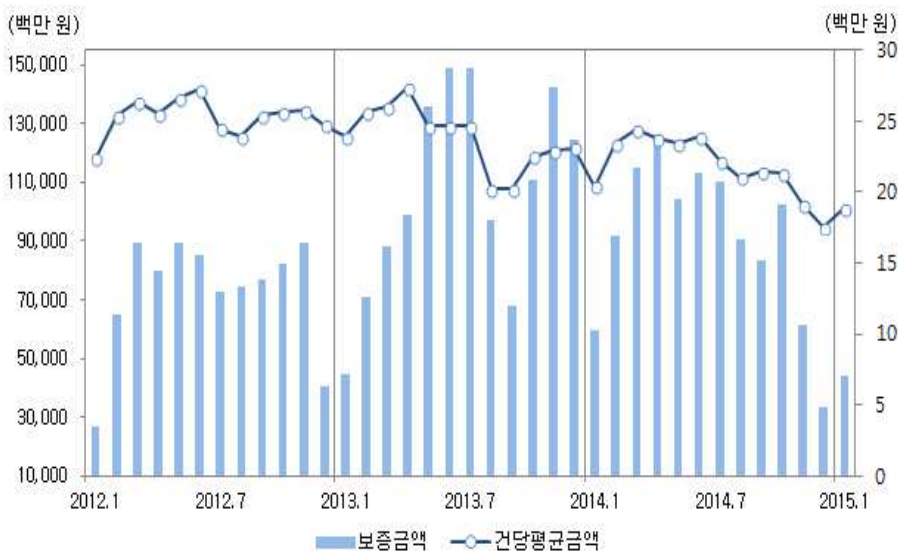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과 신설 / 부도법인 배율 동향

## | 신·용·보·증 |

## ■ 서울의 1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44,091백만 원 / 2,337건
-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31.7%, 22.3% 증가, 건당 평균 지원 금액(18.9백만 원)은 전월 대비 8.0%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26.1%, 20.2% 감소,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7.4%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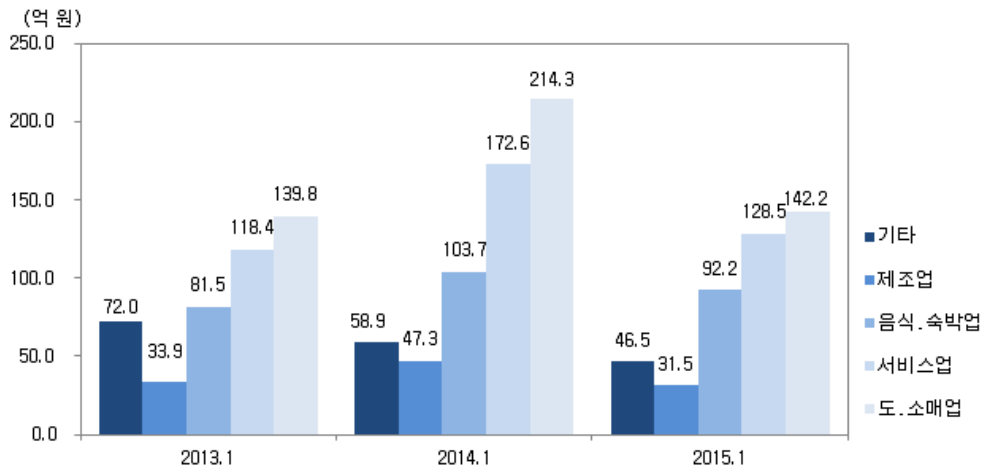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 금액 추이

### ■ 도소매업 보증금액은 전월 대비 증가, 보증지원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 제조업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

-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42.2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6%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기준 보증지원비중은 전월 대비 0.5%p 하락한 32.3%
- 제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31.5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4%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기준 보증지원비중은 7.1%로 전월 대비 3.5%p 감소
- 도소매업으로의 보증지원건수는 709건, 제조업으로의 보증지원건수는 14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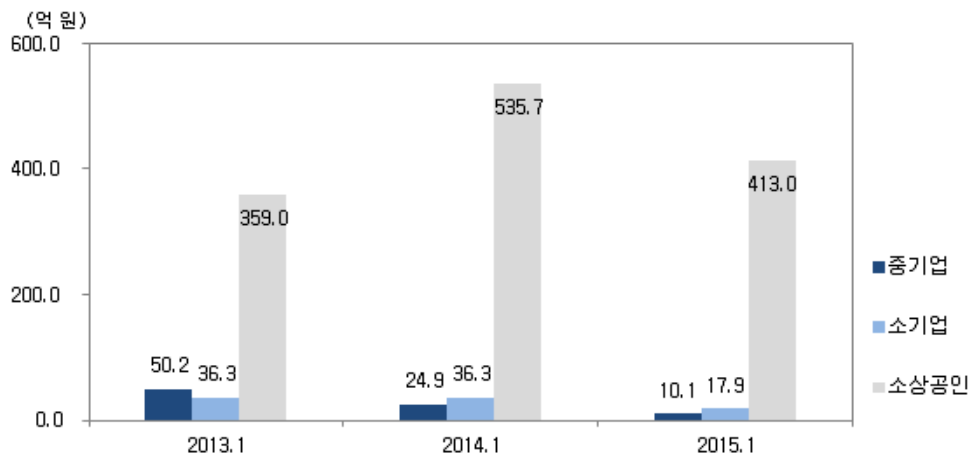
### ■ 기업규모별 보증금액은 전 기업규모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9% 감소한 413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체보증금액의 93.7%를 차지하고, 보증지원건수는 2,294건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6% 감소한 17.9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체보증금액의 4.1%를 차지하고, 보증지원건수는 36건
-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9.4% 감소한 10.1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체보증금액의 2.3%를 차지하고, 보증지원건수는 7건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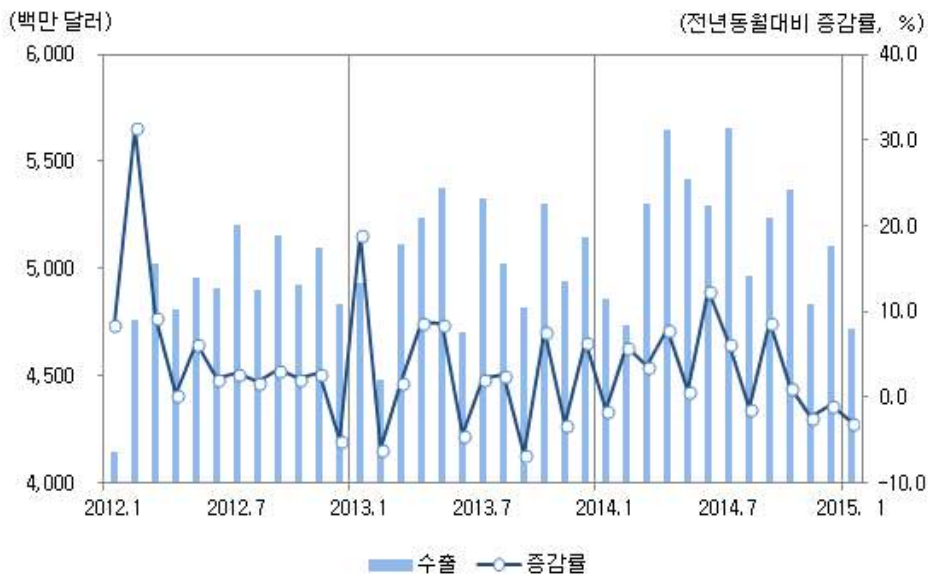
## | 수 · 출 · 입 |

### ■ 서울의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7.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하였고, 수입은 128.0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51.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하였고, 수입은 397.9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

### ■ 서울의 1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원유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이 507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고무제품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로 인하여 원유가 1,321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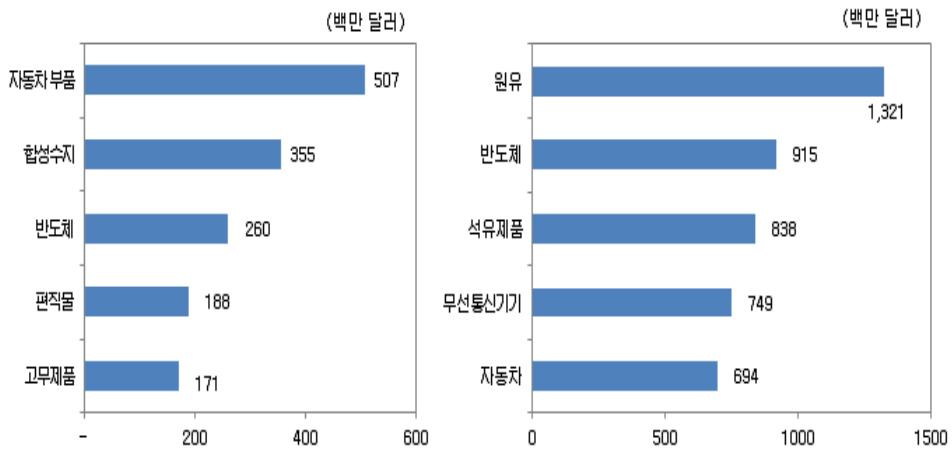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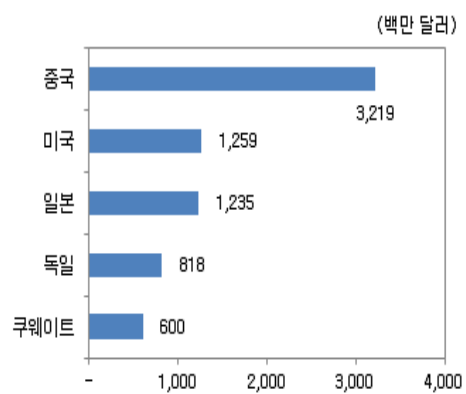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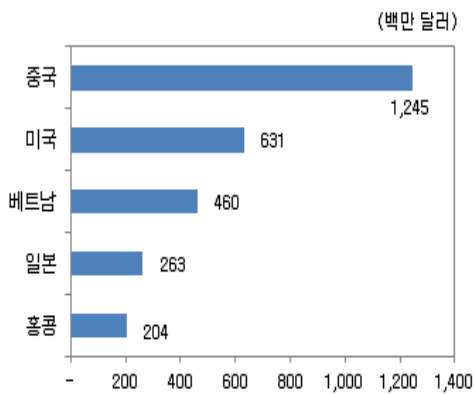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 서울의 1월 수출수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1,24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홍콩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5.6% 증가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한 3,219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쿠웨이트 순
- 대 쿠웨이트 수입은 원유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7% 높은 600백만 달러 기록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5년 1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5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5년 1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5년 1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5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5년 1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5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 FOCUS

- '서울을 영화도시로' ... 총무로에 영화 메카 세운다

## ZOOM-IN

- 서울시,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서울시, 기업성장·도시문제 해결 지원 '서울형 R&D사업' 추진

## HOT ISSUE

- 서울시,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 적극 지원
-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서울시-전라남도, 전통시장 상생발전 협약 체결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본부 gykim@seoul.go.kr)



## | ‘서울을 영화도시로’ ... 충무로에 영화메카 세운다

서울이 영화 찍기 좋고, 영화도 많이 만드는 아시아 대표 ‘영화도시’로 거듭난다.

박원순 시장은 3월 25일 종로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에서 서울 영화 문화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충무로에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설자리를 잃어가는 독립영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창작의 기반이 되는 영화인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 시네마테크 건립해 독립영화 제작·창작자 집중 지원, 영화를 매개로 한 시민소통

먼저 한국영화의 상징적 장소인 충무로에 ‘파리의 프랑세즈’, ‘뉴욕의 필름 포럼’, ‘타이베이의 필름 하우스’를 뛰어넘는 복합 영상문화 공간 <서울 시네마테크>를 건립한다. 이와 함께 약 7천㎡ 규모의 영화제작 전문 ‘실내스튜디오’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도심형세트장’도 조성해 서울을 명실상부한 한류콘텐츠 핵심기지로 구축한다.

또 상영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의 제작부터 마케팅, 상영배급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 상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국내·외 영화의 서울 촬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해 ‘서울 로케이션시스템’을 구축하고, 영화창작 주체인 감독·PD·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 중심의 지원을 펼친다. 경쟁력 있는 중·저예산 및 독립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화전문펀드’도 2017년까지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 ‘지역미디어센터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영상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박찬욱 감독, 영화배우 강수연, 이제훈 씨 등이 참석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영화 친화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 | 서울시,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 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PC방·미용실·편의점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96%는 최저임금('14년 기준 5,210원) 이상을 받고 있었지만, 미용실과 편의점은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일한지 1년 미만이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에 대해서도 일부 근로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커피점, 미용실, 편의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2,697명 대상 기본적인 근로인식 조사

서울시는 3월, 7개 업종(▲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분야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최저임금 준수 ③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퇴직금) 인지 여부 ④조사 전체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인지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아르바이트생·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함으로써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 | 서울시, 기업성장 · 도시문제 해결 지원 ‘서울형 R&D사업’ 추진

서울시가 기술경쟁력 향상,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R&D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구현을 앞당기는 「2015년 서울형 R&D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서울소재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 R&D의 대표모델이다.

### • 중소기업 성장, 특화산업 육성, 도시문제 해결형 R&D로 행복한 도시구현이 목표

이번 지원사업에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지원(82억 원) ▲공공 R&D지원 자금(59억 원)으로 총 141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탐색 및 접목을 위한 ‘R&D 제품기획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해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개발과 R&D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 ‘특허기술 상품화 및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 •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법 찾아 市 정책으로 성과확산

자체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귀금속, 인쇄, 수제화 등 서울소재 도시형특화산업군의 고도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원과 기후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향후 서울시 정책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업군별로 필요한 공동기술 개발에도 집중하는 등 R&D 동향 및 기술공급·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서울형 R&D지원이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연구소 중심에서 기술수요자인 기업, 더 나아가 기술수혜자인 지역사회와 시민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R&D를 통해 서울을 바꾸고 시민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 | 서울시,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 적극 지원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한다.

### • 26일(목) 청년창업플러스센터 「2015 서울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3월 26일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구 용산청사)에서 「2015 서울 창업기업 투자설명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창업기업-투자자 만남의 장’으로 꾸며진 이번 설명회는 참가 기업이 투자자와 청중 앞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면 투자자가 현장에서 바로 투자의사를 밝히고, 이후 절차를 거쳐 실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 기업명          | 사업아이템 및 기업실적                             |
|--------------|------------------------------------------|
| (주)해보라       | 외부소음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통화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어셋 개발     |
| (주)게임베리      | 글로벌 마케팅 검색 구매엔진(‘정글’) 개발                 |
| (주)그린라이트파트너스 | 위치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글로벌 소셜그룹 앱 개발  |
| 선의의 경쟁       | 중고 휴대폰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
| 놀라디자인        | 일상 생활에서 태양광 충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초고효율 태양광 충전기 |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창업투자지원센터 입주권(1년)과 1천만원의 창업자금, 컨설팅을 비롯해 투자자의향을 밝힌 민간투자사와 실제적인 투자연계가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이날 투자설명회에 앞서 서울시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노스마운틴 ▲오픈트레이드 ▲브라더스엔젤클럽 등 민간투자사 4곳과 「창업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로의 위상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 청년창업플러스센터 1~2층에 투자자를 위한 사무공간, 특화보육실, 컨설팅룸, 개방형 협업공간으로 조성되는 「서울창업투자지원센터」의 개관을 알리는 현판식도 진행했다.



창업지원과

## |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외투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개 외투기업의 신규고용 1,545명에 대해 35억 27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11명을 신규 고용한 외투기업 3개사가 총 2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 • 서울 8대 신성장동력분야 외투기업 중 '14년 신규채용 10명 초과기업 대상

보조금 신청조건은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추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고용인원이 전년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 • 10인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기업당 최대 2억 원

지원은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간,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한국능률협회·상공회의소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외투기업도 교육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서울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유치과

## | 서울시-전라남도, 전통시장 상생발전 협약 체결

장흥 표고버섯, 완도 김, 영광 굴비, 나주 배 등 전라남도의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이제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과 전남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호 방문 및 밀접한 교류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경험도 공유한다.

서울시와 전라남도, 서울상인연합회와 전남상인연합회는 3월 22일 양천구 목3동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전라남도 상생발전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데 뜻을 모았다.

### • 농수산물 우선구매 · 전통시장 지속공급, 우수농수산물 생산지 상호 방문 등



이번 협약은 ▲서울시 ‘전통시장 가는 날’ 농산물 직거래 행사 시 전남 농수산물 우선구매 ▲전남 농수산물 서울지역 전통시장 지속공급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 및 전통시장 상호방문 및 공동마케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

해 도농 간 및 양 지역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진병호 서울상인연합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지역의 더 많은 우수 특화상품이 서울 전통시장에 보급돼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과